#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02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이준석·천하람·이주영

우재준 • 김용태 • 김상욱

서명옥 · 김재섭 · 김대식

윤재옥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(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매개체) 설계·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·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,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(순차 공개 가격 책정)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.

전자상거래,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,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,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(안 제21조의3 및 제26조).

#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,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)

- ①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해당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이 법을"을 "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이 법 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의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

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의3(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) ①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해당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존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<u>제21조의3</u> (온라인 인터페이스 관	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 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하여 야 한다.

런 자율규약) (생 략)

제26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 ① 지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⑤ ~ ⑦ (생 략)

런 자율규약) (현행 제21조의3
과 같음)
제26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 ① -
이 법에
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 실태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
고, 이 법을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
고의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하
여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
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
있다.
⑤ ~ ⑦ (현행과 같음)